

2022년도 제10회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(조리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

2022년도 제10회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(조리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5일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채용구분	응시번호	성명	비고
기간제근로자(조리원)	202210001	김○순	

※ 예비합격자 : 202210002 김○심

2. 채용후보자 등록(서류) 안내

-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- 등록기간 : 2022.11.28.(월)~11.30.(수), 09:00 ~ 18:00 (12:00 ~ 13:00 제외)

※ 채용(예정)일 : 2022.12.01.(목)

- 등록장소 :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
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(3층 운영지원과)

- 등록방법 : 방문제출

3. 제출서류

-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본인기준) -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
 - 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본인기준) -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
 - 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
 - * 국가건강검진결과 대체가능(6개월 이내 확인서 증빙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(붙임1)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발행) 1부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- 사진(반명합판 3cm×4cm) 2매
- 보건증(조리원)

4. 기타사항

-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응시요건 부적합,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포기서(붙임2, 우편송달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취소,

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
합격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- 기타 문의 사항은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(☎ 032-745-3336)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2. 등록(임용) 포기서

【붙임 1】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시행 2022년도 제10회 기간제근로자
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
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2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

채용후보자 등록 포기서

- 시험 구분 : 2022년 제10회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(조리원) 채용
 ▪ 응시 번호 : _____
 ▪ 성 명 : _____ ▪ 생년월일 : _____
 ▪ 주 소 : _____
 _____ (우편번호 _____)
 ▪ 전 화 번 호 : 일반전화 _____ - _____ , 휴대전화 _____ - _____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조리원으로 임용될
의사가 없으므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 2022년 월 일
성명 : (서명/인)

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

- ※ 괄호안 **포기사유** 예시 : 다른 시험 합격, 현 직장 업무 계속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- 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**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소·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,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